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74

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 : 홍기원 • 박상혁 • 박 정

이정문・조승래・이해식

강선우 • 박정현 • 정을호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의 행위를 의미함.

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 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.

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.

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, 처장 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,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위해(危害)"를 "위해(법관이 발부한 체포·구속·압수 또는 수색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)"로 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영장 집행 협조의무)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체포·구속·압수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처장은 그 영장의 집행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집행 시에 처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중 "제18조"를 "제18조, 제18조의2제1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경호"란 경호 대상자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(危 ----위해(법 害)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, 관이 발부한 체포・구속・압 특정 지역을 경계·순찰 및 수 또는 수색영장의 집행은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 포함되지 아니한다)-----동을 말한다. 2. ~ 4. (생 략) 2. ~ 4. (현행과 같음) 제18조의2(영장 집행 협조의무) <신 설>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이 「형법」 제2편제1장 내 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 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체포・ 구속 • 압수 또는 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처장은 그 영장 의 집행에 응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집행 시 에 처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하는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

제21조(벌칙) ① 제9조제1	항, <u>제1</u>
<u>8조</u> 또는 제19조제2항을	을 위반
한 사람은 5년 이하의	징역이
나 금고 또는 1천만원	이하의
벌금에 처한다.	
② (생 략)	

	경호대상에 대한 안전 확보에
	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제	21조(벌칙) ① <u>제1</u>
	8조, 제18조의2제1항
	② (현행과 같음)